

조례안 검토보고서



거창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전병준]

목 차

1	거창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2	거창군 애우 배넛소 대부 조례 폐지조례안.....	8
3	거창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4	거창군 종합분석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5	거창군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6	거창군 주택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안	38
7	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7
8	거창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9
9	거창군 주차위반 자동차의 견인·보관 비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5

거창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가. 발의일자 : 2025. 5. 30.

나. 발 의 자 : 신미정 의원 대표발의

(신미정, 이재운, 신중양, 김향란, 최준규, 김홍섭,
표주숙, 이흥희, 신재화, 박수자, 김혜숙)

다. 회부일자 : 2025. 5. 30.

2. 제안이유

- 문화체육관광부의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통합형 조례(안)」에 따라 「거창군 공공디자인의 진흥 조례」와 「거창군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 조례」를 통합함으로써 공공디자인을 통합적으로 관리·발전시켜 나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 책무, 주민참여 규정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1조~제5조)
- 나. 디자인의 기본원칙 (안 제6조)
- 다.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시행, 주민의견 청취(안 제7조~제8조)

- 라.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안 제9조)
- 마.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심의 등(안 제10조 ~ 제20조)
- 바. 공공디자인 사업 시행·제안(안 제21조 ~ 제22조)
- 사. 공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안 제23조)
- 아. 전담부서 설치(안 제24조)
- 자. 추진협의체 및 관계기관 협력 등(안 제25조 ~ 제26조)
- 차. 교육 및 홍보(안 제27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6조, 제9조 등
- 나. 예산조치 : 필요시
- 다. 합 의 : 도시건축과
-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 해당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25. 04. 16. ~ 2025. 04. 25
 -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 붙임참조
 -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통합형 조례(안)」에 따라 「거창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와 「거창군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 조례」를 통합하여 운영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임.
- 공공디자인, 범용디자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회문제해결디자인에 관한 사항을 이 조례에 통합 규정하여 장차 공공디자인의 개념 확장에 대비할 수 있고, “통합”형 조례안으로서의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됨.
- 제1조 목적을 보면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자치단체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2조 정의에서 공공디자인과 함께 범용디자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회문제해결디자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등을 추진함에 있어 자치단체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디자인등 사업을 통합하여 추진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임.
- 제8조에 공고 시나 공청회 시 주민의견 청취에 있어 구체적으로 명기함으로써 주민참여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 제21조제1항제3호에 도시환경디자인사업 및 방범시설(방범문, 방범창, 방범용 망창, 창호용 잠금장치 및 경보장치 등)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기관 또는 단체 및 공익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디자인 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됨.

- 다만, 경상남도 조례의 경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과 사회문제해결디자인에 관한 사항이 조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광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과의 연계에 있어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 보임.
- 또한 별표1을 통하여 심의대상 공공시설물을 규정하고 공사비 3억원 이상은 심의를, 공사비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은 자문을, 공사비 1억원 미만은 협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자문과 협의의 차이점, 절차나 방법 등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여 혼선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 보이므로 시행 과정에서 규정마련이 필요해 보임.
- 본 개정조례안은 2개의 조례를 통합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부칙에서 「거창군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 조례」를 폐지하고 법적안정성을 위하여 경과조치를 두어 기존 2개의 조례에 따라 행해진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유효성을 인정하는 내용을 규정한 조치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며 상위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표준안에 따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됨.

거창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 1) 공공디자인 위원회 수당 비용
- 2) 범죄예방 환경 설계기법 도입 안심골목길 비용

가. 관련 조문: 지원대상 및 기준(안 제2조, 제9조)

2. 비용추계의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1) 사업 범위 내에서 지원

나. 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구분	1차연도 (2022년)	2차연도 (2023년)	3차연도 (2024년)	4차연도 (2025년)	5차연도 (2026년)	합계
공공디자인 위원회 수당	2,100	2,100	3,000	3,000	3,000	13,200 (군비)
범죄예방 안심골목길 조성사업	100,000 (도 30,000 군 70,000)	50,000 (도 15,000 군 35,000)	100,000 (도 30,000 군 70,000)	-	100,000 (도 30,000 군 70,000)	350,000 (도105,000 군245,000)

- 1) 5년이상 공공디자인 위원회 수당(군비)과 범죄예방 안심골목길 조성사업(군비, 도비)로 계속 편성되어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며, 올해는 아직 범죄예방 안심골목길 조성 사업은 미편성.
- 2) 도표는 연도별 편성된 예산을 입력하였음. 이번 개정으로 인하여 추가로 예산을 편성할 필요는 없음.

작성자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 관련 법령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디자인의 진흥 및 통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역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종합계획에 따라 지역 여건을 고려한 광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광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광역계획을 수립하려는 시·도지사는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듣고 협의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종합계획 및 광역계획에 따라 지역 여건을 고려한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시·군·구계획”이라 한다)을 별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광역계획 또는 시·군·구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제9조에 따른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변경한다.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관할 지역의 해당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 국가기관등의 장은 지역계획의 수립·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을 지역 주민들에게 알려야 하며, 지역 주민 및 지역계획의 수립·변경에 따른 이해관계자는 지역계획을 수립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역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제안할 수 있다.

⑥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제5항에 따른 지역계획 수립에 관한 안내 및 제안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9조(지역위원회) ①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제15조제2항에 따른 추진협의체에 대한 자문 및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지역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지역위원회의 위원 중에는 공공디자인과 관련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③ 그 밖에 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거창군 애우 배넛소 대부 조례 폐지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가. 발의일자 : 2025. 5. 30.

나. 발 의 자 : 표주숙 의원 대표발의

(표주숙, 이재운, 신중양, 신미정, 김향란, 최준규,
김홍섭, 이홍희, 신재화, 박수자, 김혜숙)

다. 회부일자 : 2025. 5. 30.

2. 제안이유

- 대금 상환 시 송아지 가격 하락에 따른 농가 부담 가중, 채무 이행불능 상태 농가 발생 등 여러 문제로 인하여 거창군 애우 배넛소 대부 사업이 중단됨에 따라 조례 준치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거창군 애우 배넛소 대부 조례」 를 폐지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8조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농업축산과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 해당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5. 05. 13. ~ 05. 20.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없음

5. 검토의견

- 본 폐지조례안은 영세농가와 귀농, 다문화가정 등에 암송아지를 구입하여 대부함으로써 농가의 소득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2011년 4월 4일 제정되었던 조례안임.
- 시행과정에서 대금 상환 시 송아지 가격 하락에 따른 농가 부담 가중, 채무 이행불능상태 농가 발생, 고능력 송아지를 지원하였으나 저능력 송아지가 회수됨에 따른 자금 손실 지속 등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2015년 이후 중단된 사업으로 채납자에 대한 분할 상환까지 완료된 현시점에서 더 이상 조례 존치의 필요성이 없어 폐지하려는 것임.
- 배넷소 대부사업은 실효성이 없는 사업으로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됨.

●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

나.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사.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자. 공유재산(公有財産) 관리

차. 주민등록 관리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거창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가. 발의일자 : 2025. 5. 30.

나. 발 의 자 : 박수자 의원 대표발의

(박수자, 이재운, 신중양, 신미정, 김향란, 최준규,
김홍섭, 이홍희, 신재화, 김혜숙)

다. 회부일자 : 2025. 5. 30.

2. 제안이유

○ 스마트농업 육성·지원 관련 규정을 개선하여 지속가능한 농업 기반을 마련하고 청년농업인 경영실습 스마트 임대농장과 장기임대형 스마트팜 등을 조성·운영하여 청년농업인의 스마트팜 기술 정립 및 정착 지원을 통한 미래 성장동력을 육성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정의(안 제2조)

나. 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안 제4조)

다. 스마트농업 육성사업의 지원(안 제5조)

라.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조성 및 지원(안 제11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필요시

다. 합 의 : 미래농업과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 해당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5. 05. 09. ~ 05. 16.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 붙임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없음

5. 검토의견

○ 스마트농업은 종자개발, 생산, 관리, 가공, 유통, 소비 등 농업 전반에서 IoT, 로봇, 드론, AI 등의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농산물을 원격 모니터링하고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통해 노동력과 자원을 최적화하여 수확량을 향상시키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일련의 농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 농촌의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과 기후변화, 경지면적 감소, 병충해 피해 급증에 대응할 수 있는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청년 농업인 유입과 식량안보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업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농업으로 각광받고 있음.

- 이에 거창군도 2023년 12월 27일 「거창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해 오고 있었으나 본 개정조례를 통해 미비점을 보완하고 변화된 여건에 맞춰 효율성 있게 정비하려는 것임.
- 제2조에서 농업의 정의를 삭제하고 스마트농업, 스마트농업데이터, 스마트팜을 정의하고 있으며, 스마트농업과 스마트농업의 정의를 상위법과 통일성을 기한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 안 제4조에 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 시 스마트농업을 위한 청년농업인 양성방안, 스마트농업 기반 조성, 스마트농업데이터의 수집·분석·활용, 스마트농업 관련 기자재 및 서비스산업의 육성·지원방안 계획을 신설하여 개정하였음.
- 스마트농업은 빅데이터, AI 등을 기반으로 발전하고 있어 농작업 시 수집되는 정보가 중요하기에 스마트농업데이터 수집·분석·활용 계획 수립은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신설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 안 제5조 스마트농업 육성사업의 지원에 청년농업인 지원, 스마트농업 관련 기자재 및 서비스산업 기술실증 및 교육 등 사후관리,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조성을 신설하는 것은 스마트농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필요한 개정으로 보임.

- 안 제11조에 거창군에 조성되어 추진하고 있거나 조성 예정인 청년농업인 경영실습 스마트 임대농장과 장기임대형 스마트팜 등의 조성·운영과 지원사업을 신설함으로써 청년 스마트팜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에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조문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입법예고와 관계부서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절차를 적절히 이행하였음.

- 조례안의 제정에 따른 재정 수반 요인은 있으나 기시행하고 있는 사업들로 당장 별도의 비용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조례 개정은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됨.

거창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업 지원

나. 관련 조문

- 제5조(스마트농업 육성사업의 지원)
- 제11조(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조성 및 지원)

2. 비용추계의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과거 지원사업을 근거하여 향후 5년간 비용 추계

나. 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 연도 (2025년)	2차 연도 (2026년)	3차 연도 (2027년)	4차 연도 (2028년)	5차 연도 (2029년)	합계	
총 비용(a - b)	1,664	2,364	3,737	476	476	8,717	
세출	국도비	2,613	3,913	6,540	13	13	13,092
	군비	1,664	2,364	3,737	476	476	8,717
	소계(a)	4,277	6,277	10,277	489	489	21,809
세입	국비	2,010	3,010	5,010	10	10	10,050
	도비	603	903	1,530	3	3	3,042
	소계(b)	2,613	3,913	6,540	13	13	13,092

3. 관련 의견 :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조성(공모) 사업 완료 이후 비용추계 재산정 필요

II.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2024	2025	2026	2027	2028
계	481	4,277	6,277	10,277	489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	4,000	6,000	10,000	212
경영실습임대농장	123	65	65	65	65
시설원예ICT융복합확산	63	22	22	22	22
과학영농기술현장 서비스	240	124	124	124	124
미래형 스마트팜	55	66	66	66	66

작성자 : 미래농업과장 이 창 진

●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

나.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사.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자. 공유재산(公有財産) 관리

차. 주민등록 관리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5조(농업 및 식품 관련 기술·연구 등의 진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및 식품 관련 산업의 생산성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농업 생산기술, 농업 생산기반 정비기술, 농산물 생산 이후의 관리기술, 농업 경영기법, 농업인 안전 작업기술, 농산물 유통기술, 농산물 가공·식품 제조기술 및 음식물 조리법 등에 관한 연구·개발·보급과 농업 및 식품산업 현장연구, 산학연 공동연구 및 연구평가 관리체제의 확립 등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세우고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농업 및 식품 관련 산업의 기술개발 추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및 식품 관련 산업의 기술 등을 신속하게 개발·보급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에 농업 및 식품 관련 산업의 기술개발 연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농업 및 식품 관련 산업의 기술개발 연구를 수행하는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스마트농업 및 연관 산업의 육성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스마트농업과 연관 산업을 전략적·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마트농업의 육성 목표 및 기본방향
2. 스마트농업의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스마트농업을 위한 인력 양성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4. 스마트농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5. 스마트농업 관련 기자재 및 서비스 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6. 스마트농업 관련 표준화 지원에 관한 사항
7. 스마트농업데이터의 수집·분석·활용에 관한 사항
8.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
9. 그 밖에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스마트농업 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중 스마트농업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을 스마트농업 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스마트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스마트농업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스마트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업무의 범위, 그 밖에 스마트농업 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스마트농업 육성지구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스마트농업 및 관련 산업을 집적화하고, 지역 단위로 확산시키기 위하여 시·도지사의 신청에 따라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이하 “육성지구”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육성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육성지구의 지정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육성지구 조성계획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육성지구의 조성 목적
2. 육성지구의 위치 및 면적 등 입지에 관한 사항
3. 육성지구의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육성지구의 구체적 조성 방안 및 자원 확보방안
5. 육성지구의 활성화 방안
6. 그 밖에 육성지구의 조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가 제3항에 따른 육성지구 조성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해당 육성지구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육성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제3항에 따른 육성지구 조성계획의 타당성 및 이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육성지구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육성지구의 명칭·위치·면적 등을 관보에 고시하고, 해당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육성지구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⑧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육성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육성지구의 지정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구조성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
3. 그 밖에 육성지구의 지정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⑨ 육성지구의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스마트농업 관련 서비스 산업 육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스마트농업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농작물이나 가축의 생육 및 질병 관리 등을 지원하는 스마트농업 관련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거창군 종합분석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25. 5. 30.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25. 5. 30.

2. 제안이유

- 종합분석실 분석 수수료를 전면 무료화하여 거창군 농업인의 분석실 이용을 적극 장려함으로써 지역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군 농업인에게 분석 수수료를 전면 무료화함(안 제9조)
 - 1) 현행 무료범위 : 농경지 토양성분, 퇴비·액비 성분, 농업용수
 - 2) 추가 : 농산물 잔류농약
 - 3) 예외 징수대상 :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농업인 등

4.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28조·제154조·제156조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다. 합의 :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25. 3. 11.~3. 31.
 -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 붙임
 -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거창군 농업인에게 종합분석실 분석 수수료를 전면 무료화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 종합분석실은 농업인들로 하여금 과학적 분석 정보를 바탕으로 토양에 부족한 성분을 파악해 균형 있는 시비를 가능하게 하고 농작물에 공급하는 수질을 관리해 작물의 건전한 생육을 유도하며,
- 농작물의 잔류농약을 분석하는 등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을 실현하기 위해 농업인들의 분석실 이용을 장려하는 것은 바람직한 정책임.

- 기존 조례에서는 농경지 토양성분, 퇴비·액비 성분, 농업용수의 분석수수료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었으나 농산물 잔류농약 분석을 의뢰할 때에는 분석 수수료를 납부토록 되어 있었음.
- 본 개정조례안은 거창군 농업인에 대하여 분석수수료를 전면 무료화 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수수료에 대한 농민 부담을 없앴으로써 자발적인 검사를 유발하여 종합분석실 이용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거창군 농업인에게는 분석수수료를 전면 무료화하되 제4조 제2호 규칙으로 정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농업인 등에 대해서는 제9조에 단서조항으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수수료 기준에 따라 잔류농약 분석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 규칙으로 정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농업인 등은 “거창군에 있는 기관·단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농업인이나 기관·단체”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 본 개정조례안에서 개정하려는 내용은 지역 농산물의 안정성 및 소비자 신뢰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됨.

거창군 종합분석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농산물 잔류농약 분석 수수료 무료

나. 관련 조문: 분석 수수료(안 제9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가.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예상되는 비용이 연간 5천만원 미만

3. 미첨부 사유

가. 2023. 12. 종합분석실 운영 이후 농산물 잔류농약 분석 현황

1) 대부분 공공급식: 무료

2) 농가 1건: 230,000원

나. 분석 수수료 무료로 인한 세입감소 거의 없음

작성자 미래농업과장 이 창 진

●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제29조(규칙)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제154조(수수료)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법령에 달리 정해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게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 「농촌진흥청 시험·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

[시행 2012. 1. 10.]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37호, 2012. 1. 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촌진흥청 및 그 소속 시험연구기관에 의뢰되는 농업에

관한 시험·분석 및 농업용 기자재의 검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험”이란 물질의 성질·효능 및 변화와 그 물질이 다른 물질에 미치는 영향을 장기간의 실험·연구를 통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
2. “분석”이란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 및 구조를 단기간의 검사를 통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
3. “검정”이란 농업용 기자재의 구조·성능 및 안전성을 조사·측정하여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제12조(수수료 등) ① 제3조와 제9조에 따라 시험 등을 의뢰하거나 성적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수수료를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험을 의뢰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 외에 시험에 필요한 경비를 시험 실시의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따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험연구기관의 장은 시험이 실시되기 전에 그 시험 의뢰가 철회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이미 납부된 시험경비를 돌려주어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수수료와 시험에 필요한 경비는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농촌진흥청 시험의뢰기간 및 수수료와 시험경비」

[시행 2021. 10. 25.] [농촌진흥청고시 제2021-26호]

1. 시험의뢰의 기간 및 의뢰시험의 수행방법

- 시험의뢰의 기간 : 시험의뢰는 수시로 할 수 있다.
- 의뢰시험의 수행방법

가. 의뢰된 시험은 "농촌진흥청시험·분석 및 검정의뢰규칙"의 업무절차에 의한다.

나. 의뢰된 시험 중 유사한 품목이 의뢰된 경우 시험수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동일한 포장에서 동시비교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 의뢰된 시험은 설계심 의 후 작물재배시기에 맞추어 시험을 수행한다.

2. 분석 및 검정의뢰 수수료

분 석 항 목 명	분석기준	수수료 (원)	기 타
1. 비료의 성분 및 물리성분석< '07.11.30, '13.6.1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성분(질소, 인산, 가리, 고토, 망간, 아연, 동, 붕소, 철, 규산, 물리브덴, 알칼리분, 유기물, CEC, 칼슘, 초기용출율) ◦유해성분(황청산화물, 설파민산, 아질산, 카드뮴, 비소, 납, 수은, 크롬, 염산불용해물, 니켈, 구리, 티탄, 아연, 염분, 염소, 뷰렛태질소, 아황산) ◦기타성분 	1점 1성분	14,300	별 도 의 성분 의뢰 가 있 을 경우 추 가 성분 만 부담
- 유기물/질소의비	1점	28,600	
- 구연산칼슘	1점	76,000	
- DMPP	1점	76,000	
- 디시안디아미드태질소	1점	33,000	
- 수용성질소	1점	33,000	
- 질소활성계수	1점	33,000	
- 수용성세륨	1점	30,600	
◦수분	1점	7,500	
◦물리성			
- 분말도	1점	9,600	
- 통과도	1점	25,400	
◦무숙도			
- 공백법	1점	43,800	
- 솔비타	1점	81,400	
- 종자발아법	1점	91,100	
◦무산물비료의 미생물상(세균, 방선균, 효모사상균)	1점 1성분	34,200	
2. 비료포장대(품질) 검사< '07.11.30 삭제>			
3. 농약(원제) 이화학분석< '13.6.1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성분(부성분, 유해성분 포함) ◦물리성(분말도, 수용성, 수화성 등) ◦정량분석 ◦정성분석 ◦유해성분 (DOT, HCB, ETU, Hydrazine, NPDA, PCE) ◦친환경유기농자재(아자디락틴, 마트린) 	1성분 1항목 1점 1점 1점 1성분 1점 1성분	102,600 10,800 120,000 137,600 141,200 250,700	
4. 농약잔류량분석(작물, 토양, 수질별로 분석)	1약종 (동일성분 1시료추가시)	174,000 (34,900)	
5. 오염분석< '13.6.1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작물(S, F, Cl, 중금속) ◦수질(N, COD, SO₄, Na, C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H₃-N - 클로로필-a 	1점 1성분 1점 1성분 1점 1점	11,700 8,500 22,400 20,000	

생략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 2025. 1. 23.] [법률 제20503호, 2024. 10. 22., 일부개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농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5. “농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 가. 읍·면의 지역
 -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 6.~9. (생략)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4. 10. 25.] [대통령령 제34951호, 2024. 10. 22., 일부개정]

제3조(농업인의 기준) ① 법 제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② 삭제 <2015. 12. 22.>
- ③ 제1항에 따른 농업인의 확인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거창군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가. 발의일자 : 2025. 5. 30.

나. 발 의 자 : 김홍섭 의원 대표발의

(김홍섭, 이재운, 신중양, 신미정, 김향란, 최준규,
이홍희, 박수자, 표주숙, 신재화, 김혜숙)

다. 회부일자 : 2025. 5. 30.

2. 제안이유

○ 거창군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체육활동 촉진을 위해 스포츠 활성화 및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청소년 체육활동 활성화 지원 신설(안제8조제2항제11호)

나. 경비 지원대상의 신설(별표)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청소년기본법」 제3조
-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3조, 제8조, 제9조, 제14조, 제18조의2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6조
- 「생활체육진흥법」 제5조
- 「스포츠기본법」 제3조

나. 예산조치 : 필요시

다. 합 의 : 체육시설사업소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 해당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5. 05. 09. ~ 2025. 05. 16.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 불임참조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없음

5) 참고 : 해당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거창군의 미래자산인 청소년의 체육활동 촉진을 위해 스포츠 활성화 방안 및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임.
- 제8조제2항 경비의 지원대상 사업에 제11호를 신설하여 청소년 체육활동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별표에 청소년 체육활동 지원과 세부지원사업 내용을 신설하여 선수발굴 및 육성, 재능기부 활성화, 대회유치 및 개최, 그 밖에 군수가 청소년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음.

- 신설된 청소년 체육활동 지원의 세부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 지원분야에서 추진할 수는 있는 사업으로 보이나 청소년 체육활동 지원의 안정성을 고려해 볼 때 조례 개정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됨.

거창군 체육진흥 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 1) 선수 발굴 및 육성 사업비
- 2) 대회 유치 및 개최비

나. 관련 조문: 경비의 지원대상(안 제8조②항)

2. 비용추계의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1) 사업 범위 내에서 지원

나. 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구분	1차연도 (2022년)	2차연도 (2023년)	3차연도 (2024년)	4차연도 (2025년)	5차연도 (2026년)	합계
전국체전 참가선수 육성	4,000 (균 70,000)	4,000 (균 70,000)	4,000 (균 70,000)	4,000 (균 70,000)	4,000 (균 70,000)	20,000 (균 20,000)
경남 초·중학생 체육대회 참가	16,000 (균 16,000)	17,000 (균 17,000)	17,000 (균 17,000)	17,000 (균 17,000)	17,000 (균 17,000)	84,000 (균 84,000)
청소년 우수선수 장려금	20,000 (균 20,000)	20,000 (균 20,000)	20,000 (균 20,000)	20,000 (균 20,000)	20,000 (균 20,000)	100,000 (균 100,000)
청소년 체육 아카데미	22,300 (균 22,300)	22,300 (균 22,300)	22,300 (균 22,300)	18,500 (균 18,500)	18,500 (균 18,500)	103,900 (균 103,900)
우수선수 발굴 육성 지원	80,000 (균 80,000)	120,000 (균 120,000)	90,000 (균 90,000)	90,000 (균 90,000)	90,000 (균 90,000)	470,000 (균 470,000)
엘리트운동부 육성	317,500 (균 317,500)	330,000 (균 330,000)	380,000 (균 380,000)	398,472 (균 398,472)	400,000 (균 400,000)	1,825,972 (균 1,825,972)
우수선수 육성	20,000 (균 20,000)	20,000 (균 20,000)	20,000 (균 20,000)	20,000 (균 20,000)	20,000 (균 20,000)	80,000 (균 80,000)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4,800 (도 960 균 3,840)	4,800 (도 960 균 3,840)	4,800 (도 960 균 3,840)	5,280 (도 1,056 균 4,224)	5,280 (도 1,056 균 4,224)	24,960 (도 4,992 균 19,968)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115,000 (국 80,500 도 10,350)	159,600 (국 111,720 도 14,364)	199,200 (국 139,440 도 17,928)	216,345 (국 151,442 도 19,471)	216,345 (국 151,442 도 19,471)	906,490 (국 634,544 도 81,584)

	군 24,150	군 33,516	군 41,832)	군 45,432)	군 45,432)	군 190,362)
신나는 주말체육 프로그램 운영	-	-	-	88,260 (국 61,782 도 7,943 군 18,535)	88,260 (국 61,782 도 7,943 군 18,535)	88,260 (국 176,520 도 15,886 군 37,070)
					계	3,703,582

- 1) 5년이상 경남 초·중학생체육대회 참가 지원 등 9개 보조사업으로 계속 편성되어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며, 사업비는 해마다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근소한 폭으로 상향되고 있는 추세임.
- 2) 도표는 연도별 편성된 예산을 입력하였음. 이번 개정으로 인하여 추가 예산편성은 불요함.

작성자 체육시설사업소 소장 임순행

● 관련 법령

□ 「청소년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2. “청소년육성”이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며 근로 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사회 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청소년을 보호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한다.
3.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교류활동·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
4. “청소년복지”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5. “청소년보호”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유해한 물질·물건·장소·행위 등 각종 청소년 유해 환경을 규제하거나 청소년의 접촉 또는 접근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6.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활동·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7. “청소년지도자”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 가.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 나.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 다.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8. “청소년단체”란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2. 29., 2012. 2. 17., 2014. 1. 28., 2015. 3. 27., 2019. 1. 15., 2020. 2. 4., 2020. 12. 8., 2022. 1. 18., 2023. 8. 8., 2025. 1. 31.>

1. “체육”이란 운동경기·야외 운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

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

4. “선수”란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

4의2. “국가대표선수”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또는 경기단체가 국제경기대회(친선경기대회는 제외한다)에 우리나라의 대표로 파견하기 위하여 선발·확정한 사람을 말한다.

5.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6. “체육지도자”란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 이 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가. 스포츠지도사

나. 건강운동관리사

다. 장애인스포츠지도사

라.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마. 노인스포츠지도사

7. “체육동호인조직”이란 같은 생활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자의 모임을 말한다.

8. “운동경기부”란 선수로 구성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교나 직장 등의 운동부를 말한다.

9.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가. 제5장에 따른 대한체육회, 시·도체육회 및 시·군·구체육회(이하 “지방체육회”라 한다), 대한장애인체육회, 시·도장애인체육회 및 시·군·구장애인체육회(이하 “지방장애인체육회”라 한다), 한국도평방지위원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나. 제11호에 따른 경기단체

다.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국기원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태권도진흥재단

라. 「전통무예진흥법」 제5조에 따른 전통무예단체

마.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20조에 따른 사업자단체

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체육시설업협회

사. 국내대회, 국제대회 등 대회 개최를 위하여 설립된 대회조직위원회

아. 그 밖의 체육활동 법인 또는 단체

10. “도핑”이란 선수의 운동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지 목록에 포함된 약물 또는 방법을 복용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11. “경기단체”란 특정 경기 종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대한체육회나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법인이나 단체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 단체를 말한다.

11의2. “스포츠비리”란 체육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체육단체의 운영 중 발생하는 회계부정, 배임, 횡령 및 뇌물수수 등 체육단체의 투명하고 민주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운동경기 활동 중 발생하는 승부조작, 편파판정 등 운동경기의 공정한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

11의3. “체육계 인권침해”란 운동경기, 훈련, 체육단체의 운영 등과 관련하여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체육단체의 임직원 등 간에 발생하는 인권침해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성별·학력·장애·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를 말한다.

12. “체육진흥투표권”이란 운동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환급금을 내주는 표(票)로서 투표 방법과 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혀 있는 것을 말한다.

제3조(체육 진흥 시책과 권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제8조(지방 체육의 진흥) ①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 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시설 등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그 행정구역 단위로 연 1회 이상 체육대회를 직접 개최하거나 체육단체로 하여금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는 직장인 체육대회를 연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제9조(학교 체육의 진흥) 학교는 학생의 체력 증진과 체육 활동 육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4조(선수 등의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선수와 체육지도자에 대하여 필요한 육성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4.>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우수 선수와 체육지도자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표창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수 선수에게 아마추어 경기 생활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요청하면 우수 선수와 체육지도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3. 18.>

④ 삭제 <2021. 8. 10.>

⑤ 삭제 <2020. 2. 4.>

⑥ 삭제 <2020. 2. 4.>

제18조의2(선수 등 체육인 보호 시책의 마련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로부터 선수 등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18.>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성폭력 등 체육계의 폭력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장 점검 및 지도·감독을 강화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점검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20. 8. 18.>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현장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및 체육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5. 1. 31.>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경기단체 및 운동경기부에 소속된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및 임직원의 인적사항, 소속 이력, 수상 정보, 경기실적 및 제18조의13에 따른 징계정보 시스템에 등록된 징계 이력 등에 관한 세부 인적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8., 2025. 1. 31.>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제4항에 따른 위탁 기관·단체의 장을 포함한다)은 제4항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및 체육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유는 제외한다)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5. 1. 31.>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6조(학교 체육의 진흥을 위한 조치) 법 제9조에 따라 학생의 체력 증진과 체육 활동의 육성을 위하여 학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동회나 체육대회의 실시
2. 학생에 대한 한 종목 이상의 운동 권장과 지도
3. 체육동호인조직의 결성 등 학생의 자발적 체육 활동의 육성·지원
4. 운동경기부와 선수의 육성·지원
5. 그 밖에 학교 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생활체육진흥법」

제5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스포츠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포츠”란 건강한 신체를 기르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며 질 높은 삶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행하는 신체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문화적 행태를 말하며,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을 포함한다.
2. “전문스포츠”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이하 “선수”라 한다)가 행하는 스포츠 활동을 말한다.
3. “생활스포츠”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스포츠 활동을 말한다.
4. “장애인스포츠”란 장애인이 참여하는 스포츠 활동(생활스포츠와 전문스포츠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5. “학교스포츠”란 학교(「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이루어지는 스포츠 활동(학교과정 외의 스포츠 활동과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운동경기부의 스포츠 활동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6. “스포츠산업”이란 스포츠와 관련된 재화와 서비스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7. “스포츠클럽”이란 회원의 정기적인 체육활동을 위하여 「스포츠클럽법」 제6조에 따라 등록을 하고 지역사회의 체육활동 진흥을 위하여 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거창군 주택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25. 5. 30.
- 나. 제 출 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25. 5. 30.

2. 제안이유

- 주택 화재로 피해를 입은 군민에게 주택화재 폐기물 처리비를 지원하여 신속한 폐기물 처리와 그들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목적을 정함(안 제1조)
- 나. 화재폐기물을 정의함(안 제2조)
- 다. 지원 대상·기준·제외·신청을 정함(안 제3조~제7조)
 - 1)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단독·공동주택에 실제 거주하고 있을 것
 - 2) 소실여부에 따라 차등 지원
 - 3) 빈집, 중복지원 등 제외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1) 「지방자치법」 제13조·제28조, 「지방재정법」 제17조
- 2) 「재난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나. 예산조치 : 2026년도 예산 20,000천원 확보예정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25. 5. 9.~5. 27.
 -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 붙임
-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주택화재 발생 시 화재사건에 대한 폐기물 처리 지원규정이 없어,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경우 화재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와 재난에도 불구하고, 폐기물 처리라는 또 다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화재발생 이후 폐기물 처리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화재로 인한 주민의 재산상의 손해를 일부 보전하여 신속한 재난복구와 생활안정을 돕고, 장기간 방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 제4조 지원 대상을 보면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되어 있음.
- 제5조 지원내용에는 화재폐기물 지원을 기준에 따라 최대 500만원까지 차등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제6조에는 중복지원 제외 등 지원 제외 대상을 규정하고 있음.
- 경상남도 내 화재폐기물에 한정하여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하고 있는 시·군은 합천군, 함양군, 하동군, 남해군으로 거창군 지원금액과 같이 최대 500만원까지 차등 지원하고 있음.
- 경상남도 내 주택화재 시 화재폐기물로 한정하지 않고 피해지원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곳은 산청군 최대 500만원까지 차등 지원하고 있고, 의령군과 창녕군의 경우 피해지원금으로 최대 1,000만원까지 차등지원하고 있으며 사천시의 경우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음.
- 본 제정조례안은 거창군 주택화재 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로 제정안이 상정되어 주택화재 시 폐기물 처리비 지원만 규정되어 있음. 조례명을 거창군 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로 하여 폐기물 처리비 지원을 비롯하여 임시거처, 긴급 생활용품, 심리회복 지원 등 화재 피해 시 필요한 포괄적인 지원내용을 담은 조례로 제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함.

- 화재 시 임시거처 지원의 경우 긴급복지 지원사업으로 복지정책과에서 지원을 하고 있으나 대상이 중위소득 75%이하이며, 재산, 금융 등 조건이 까다롭게 되어 있어 한정된 군민만 혜택을 볼 수 있음. 따라서 전 군민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본 제정조례의 취지에 비추어볼 때 임시거처 지원을 조례에 담아 지원할 필요가 있어 보임.
- 또한 아립1004운동 지원을 살펴보면 「거창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조례」에 기초하여 주택화재가구에 대하여 300만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고 아립1004 지원기준에 적합할 경우 타 지원여부 상관없이 위로금 1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제도간 연계와 홍보에도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심리회복 지원의 경우 재해현장을 경험한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정신 건강 문제는 개인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심리회복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건강증진과의 재난심리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될 수 있도록 조례에 지원을 명시하여 본 조례가 주택화재 시 전반적인 지원이 원스톱 행정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됨.
- 다만, 화재 발생 이후 폐기물 처리 지원이 꼭 필요하고 화재 발생 현장에서 요구가 많았던 사항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시급해 보임.
- 조례가 제정된다면 임시거처, 긴급 생활용품, 심리회복 지원 사항 등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개정을 통해 보완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됨.

거창군 주택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안 비용 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나. 관련조문: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안 제3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제4조제1항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인 경우

나. 의안의 내용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2026년도 예산 20,000천원 확보예정

가. 경남도 내 시군 평균 지원 수: 5건

나. 평균 화재폐기물 처리비용: 4,000천원

다. 5건 * 4,000천원 = 20,000천원

작성자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 관련 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951호, 2024. 1. 9., 타법개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가.~카. (생략)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 농림·수산·상공업 등 산업 진흥
가.~하. (생략)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
가. 지역개발사업
나. 지방 토목·건설사업의 시행
다.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
라. 지방도(地方道), 시도(市道)·군도(郡道)·구도(區道)의 신설·개선·보수 및 유지
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바. 농어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사. 자연보호활동
아.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자.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 차. 소규모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카. 도립공원, 광역시립공원, 군립공원, 시립공원 및 구립공원 등의 지정 및 관리
- 타.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녹지, 유원지 등과 그 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 파.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시설의 설치 및 관리
- 하. 지방 제도사업의 경영
- 거. 주차장·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너.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 더.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
 - 가.~다. (생략)
-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
 - 가.·나.
- 7. 국제교류 및 협력
 - 가.·나. (생략)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제29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지방재정법」

[시행 2025. 4. 1.] [법률 제20871호, 2025. 4. 1., 일부개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③ 삭제 <2013. 7. 16.>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5. 1. 2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공동육아나눔터(「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작은도서관(「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1층에 설치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가. 단독주택

나. 다중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 2)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 3)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주거 목적으로 한정한다)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 4) 적절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실별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 다가구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주거 목적으로 한정한다)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 3) 19세대(대지 내 동별 세대수를 합한 세대를 말한다)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라. 공관(公館)

2.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공동육아나눔터·작은도서관·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아파트형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가목이나 나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주거 목적으로 한정한다)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며,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가.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나.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다.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라. 기숙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공간의 구성과 규모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 다만, 구분 소유된 개별 실(室)은 제외한다.

1) 일반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서 해당 기숙사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 세대 수(건축물의 일부를 기숙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숙사로 사용하는 세대 수로 한다. 이하 같다)의 50퍼센트 이상인 것(「교육기본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학생 복지주택을 포함한다)

2) 임대형기숙사: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실이 20실 이상이고 해당 기숙사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 세대 수의 50퍼센트 이상인 것

3.~29. (생략)

□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6. 9.] [법률 제18204호, 2021. 6. 8., 제정]

제16조(화재증명원의 발급) ① 소방관서장은 화재와 관련된 이해관계인 또는 화재발생 내용 입증에 필요한 사람이 화재를 증명하는 서류(이하 이 조에서 “화재증명원”이라 한다) 발급을 신청하는 때에는 화재증명원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화재증명원의 발급신청 절차·방법·서식 및 기재사항, 온라인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25. 5. 30.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25. 5. 30.

2. 제안이유

- 생활폐기물 중 사람의 건강과 주변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생활계 유해폐기물을 안전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배출·처리 기준과 군수의 책무를 정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련 내용 신설함(안 제2조·제3조·제7조)
 - 1) 정의, 군수의 책무
 - 2) 배출 및 처리 방법
- 나. 용어나 내용을 정비함(안 제2조·제8조·제12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1)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4·제14조의5·제15조
- 2)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16조의3
- 3) 국민권익위원회 권고(국민생활 안전을 위한 폐농약 수거처리 활성화 방안)

나. 예산조치 : 2026년 예산 25,000천원 확보 예정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25. 4. 29.~5. 19.
 -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 붙임
-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배출·처리기준과 군수의 책무를 정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임.
- 제2조제1호 생활폐기물에 대한 정의는 폐기물관리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 재기재할 필요가 없어 삭제하고 “생활계 유해폐기물”에 대한 정의로 개정하였음. 제2조제5호 대행에 대한 정의를 삭제하는 것은 조례 제12조에 대행에 대하여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어 별도로 정의할 필요가 없어 삭제하는 것임.

- “생활계 유해폐기물”에 대한 내용 신설은 법제14조의4에 규정된 군수는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매년 그 추진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는 내용에 따라 제3조에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배출·수거·운반·처리의 관리체계를, 제7조 제7항에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방법을 규정하기 위한 것임.

- 제8조 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는 해당 폐기물의 수거일, 수거장소 등을 공고하고 환경달력을 만들어 배포토록 되어 있는 부분을 안내문을 제작하여 배포토록 함으로써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임.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이 정해져 있고,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가. 주간작업을 원칙으로 할 것나. 3명(운전자를 포함한다)이 1조를 이루어 작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다. 폭염·강추위, 폭우·폭설, 강풍, 미세먼지 등으로부터 환경미화원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시간 조정 및 작업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

- 단서조항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안전기준의 적용예외 사항을 정하도록 되어 있어 제12조의2에 그 적용예외 사항을 정해 놓았으나 이번 개정을 통하여 내용을 보완하는 사항임.
- 본 개정조례안을 통하여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체계와 처리 방법 등이 마련되면 폐농약, 폐형광등, 폐페인트, 소형 전자 기기, 생활화학제품(폐광택제, 폐접착제, 세정제, 세척용품) 등의 무분별한 배출로 인한 환경오염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주민들이 관리체계에 따라 적절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홍보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내용과 체계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됨.

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가. 비용발생 요인: 생활계 유해폐기물 수거함 설치 및 안내문 제작배포 등
- 나. 관련 조문: 생활계 유해폐기물 배출 수거 등 관리체계 마련 (안 제3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가.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예상되는 비용이 연간 5천만원 미만

3. 미첨부 사유

- 가.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수거체계 구축 비용이 5천만원 미만
 - 1) 수거함 구입 평균 금액: 400천원 × 50개소 정도 = 20,000천원
 - 2) 안내문 등 홍보물 제작: 5,000천원 정도

작성자 환경과장 표정애

● 관련 법령

□ 「폐기물관리법」

[시행 2025. 3. 25.] [법률 제20859호, 2025. 3. 25.,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4. “지정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醫療廢棄物) 등 인체에 위해(危害)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5. “의료폐기물”이란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摘出物), 실험 동물의 사체 등 보건·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 5의2.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란 의료폐기물로 인한 감염 등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의료폐기물을 넣어 수집·운반 또는 보관에 사용하는 용기를 말한다.
- 5의3. “처리”란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을 말한다.
6. “처분”이란 폐기물의 소각(燒却)·중화(中和)·파쇄(破碎)·고형화(固形化) 등의 중간처분과 매립하거나 해역(海域)으로 배출하는 등의 최종처분을 말한다.
7. “재활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 가. 폐기물을 재사용·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 나.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거나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활동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
8.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의 중간처분시설, 최종처분시설 및 재활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9. “폐기물감량화시설”이란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줄이고, 사업장 내 재활용을 통하여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14조의4(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의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폐기물(이하 “생활계 유해폐기물”이라 한다)을 안전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매년 그 추진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1.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 현황
2. 생활계 유해폐기물 수거시설의 설치 현황 및 향후 설치 계획
3.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한 기술적·재정적 지원 방안(재원의 확보계획을 포함한다)

②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종류, 제1항에 따른 처리계획 수립의 주기·절차 및 추진성과의 평가방법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5(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① 환경부장관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수집·운반차량과 안전장비의 기준 및 작업안전수칙 등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안전기준(이하 이 조에서 “안전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고 매년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안전기준, 적용 대상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①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생활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그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양을 줄여서 배출하여야 한다.

② 생활폐기물배출자는 제1항에 따라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의 분리·보관에 필요한 보관시설을 설치하고, 그 생활폐기물을 종류별, 성질·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에서는 분리·보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③ 생활폐기물배출자는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는 경우 매년 2월 말까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의 위탁 처리실적과 처리방법, 계약에 관한 사항 등을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한 자의 처리실적을 관할구역 내 생활폐기물 발생 및 처리실적에 포함하는 등 관리하여야 한다.

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양을 줄여서 배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분리·보관에 필요한 보관시설을 설치하려는 생활폐기물배출자에게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시설의 종류 및 설치·관리 기준, 지원의 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68조(과태료) ①·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자
2. 제8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4. 제1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조례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 4의2. 제1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 4의3.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기간 내에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입력한 자
 5. 제29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당 시설의 사용을 시작한 자
 6. 제3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또는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7. 제36조제1항에 따른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 7의2. 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 장부기록사항을 기간 내에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입력한 자
 8. 제3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고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제2항제9호의2의 경우는 제외한다)
 9. 제38조제4항에 따른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10. 삭제 <2019. 11. 26.>
 11. 삭제 <2019. 11. 26.>
 12. 제40조제9항에 따른 보험증서 원본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13. 제40조제10항에 따른 변경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14. 제5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별로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5. 4. 4.] [환경부령 제1168호, 2025. 4. 4., 일부개정]

제16조의2(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14조의4제1항에 따른 생활계 유해폐기물(이하 “생활계 유해폐기물”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농약
2. 폐의약품
3. 수은이 함유된 폐기물
4. 천연방사성제품생활폐기물[「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가공제품 중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으로서 방사능 농도가 그램당 10벵크렐 미만인 폐기물(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할 제조업자가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가공제품으로부터 천연방사성핵종(天然放射性核種)을 포함하지 않은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그 부분을 제외한다]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 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4조의4제1항에 따라 5년 주기로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에는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4조의4제1항에 따라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 중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의 추진성과를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평가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추진성과의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을 조정하여야 한다.

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을 제2항 전단에 따라 수립하거나 제4항에 따라 조정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의 수립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6조의3(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① 법 제14조의5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해야 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2.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받은 업체가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1. 청소차량에 다음 각 목의 장치를 모두 설치·운영할 것
 - 가. 청소차량에 의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후방영상장치
 - 나. 비상시 환경미화원이 적재 장치의 작동을 제어할 수 있는 안전멈춤바 및 양손 조작방식의 안전스위치
 - 다. 청소차량 배출가스가 환경미화원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는 수직형의 배출가스 배기관[청소차량이 내연기관이면서 압축 또는 압착식 진개(塵芥) 차량이거나 재활용품 전용 저압축형 차량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안전화, 안전조끼, 장갑 등 보호장구를 환경미화원에게 지급할 것
3.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 다만,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가. 주간작업을 원칙으로 할 것
 - 나. 3명(운전자를 포함한다)이 1조를 이루어 작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
 - 다. 폭염·강추위, 폭우·폭설, 강풍, 미세먼지 등으로부터 환경미화원의 건강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시간 조정 및 작업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종류」

[시행 2022. 2. 28.] [환경부고시 제2022-47호, 2022. 2. 28., 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 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종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종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제1항제5호에 따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리하여야 할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페인트
2. 폐광택제
3. 폐접착제
4. 그 밖에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 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조례로 생활계 유해폐기물로 정하여 관리하는 폐기물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5. 1. 21.] [대통령령 제35222호, 2025. 1. 21., 일부개정]

제3조(적용범위) 이 영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주체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주택,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조성하는 대지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38조(폐기물보관시설) 주택단지에는 생활폐기물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설치장소는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고 주민의 이용에 편리한 곳이어야 한다.

□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16. (생략)
17. “차마”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
 - 가. “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1) 자동차
 - 2) 건설기계
 - 3) 원동기장치자전거
 - 4) 자전거
 - 5)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動力)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다만, 철길이나 가설(架設)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것,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제21호의3에 따른 실외이동로봇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장치는 제외한다.
 - 나. “우마”란 교통이나 운수(運輸)에 사용되는 가축을 말한다.
- 17의2. “노면전차”란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노면전차로서 도로에서 궤도를 이용하여 운행되는 차를 말한다.

18. “자동차”란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견인되는 자동차도 자동차의 일부로 본다)로서 다음 각 목의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다음의 자동차. 다만,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제외한다.

- 1) 승용자동차
- 2) 승합자동차
- 3) 화물자동차
- 4) 특수자동차
- 5) 이륜자동차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18의2.~34.(생략)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2025. 3. 20.] [행정안전부령 제554호, 2025. 3. 20., 일부개정]

제2조(차마에서 제외하는 기구·장치) ①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에서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장치”란 너비 1미터 이하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구·장치를 말한다.

1. 유모차
2. 보행보조용 의자차(「의료기기법」 제19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의료기기의 기준규격에 따른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를 말한다)
3. 노약자용 보행기
4.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놀이기구(어린이가 이용하는 것에 한정한다)
5. 동력이 없는 손수레
6.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자전거로서 운전자가 내려서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것
7. 도로의 보수·유지, 도로상의 공사 등 작업에 사용되는 기구·장치(사람이 타거나 화물을 운송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② 법 제2조제17호가목5)에서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제21호의3에 따른 실외이동로봇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장치”란 다음 각 호의 기구·장치를 말한다. <신설 2023. 10. 19.>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구·장치
2. 실외이동로봇

□ 「지방자치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951호, 2024. 1. 9., 타법개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의안번호 제2024 - 276호

(국민생활 안전을 위한 폐농약 수거처리 활성화 방안)

□ 조치사항 및 소관기관

과제명	조치사항	소관기관
1. 폐농약 수거·처리 실시 및 활성화	① 폐농약 수거·처리 실시	기초 지방자치단체,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② 홍보 강화방안 마련	
	③ 지자체장의 폐농약 수거·처리 시책 마련 및 추진 책무를 조례에 규정	
2. 폐농약 수거·처리 활성화 지원방안 마련	① 폐농약 수거·처리 활성화 지원방안 마련 및 시행	환경부, 광역지방자치단체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제외)
3. 폐농약 배출 교육 강화 및 정보제공 확대	① 농약판매관리인 대상 교육 시 폐농약 배출 방법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	농촌진흥청
	② 농업기술포털(농사로), 농약안전정보시스템에 폐농약 배출 요령 게재	
	③ 농약 포장지에 폐농약 처리에 관한 설명이 기재될 수 있도록 「농약, 원제 및 농약활용기자재의 표시기준」 개정	

거창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25. 5. 30.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25. 5. 30.

2. 제안이유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교통사업자, 특별교통수단 등을 운행하는 운전자 등에 대한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교육의 방법, 내용 등을 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법령 위임에 맞게 교육을 구체화함(안 제16조)
 - 1) 대상 : 교통사업자, 특별교통수단 등을 운행하는 운전자, 택시운수 종사자
 - 2) 내용 :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교육, 교통

약자 서비스에 관한 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3) 방법 : 집합교육, 원격교육, 체험교육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3조제7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정부합동평가대상

나. 예산조치 : 경상남도에서 지정한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에서 도내 특별교통수단 운수종사자 등의 교육 일괄 시행에 따라 예산 불필요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5. 5. 23.~5. 27.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5) 법제처 필수조례 참고 조례안 반영함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교통사업자, 특별교통수단 등을 운행하는 운전자, 택시운수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의 방법, 내용 등을 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임.

- 법령에서 교육대상자가 받아야 할 교육내용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고 시행규칙에서 교육의 횟수, 교육시간, 교육내용까지 정해져 있는 사항으로 법령 및 시행규칙에 있는 내용 그대로 조례에 재기재하는 사항임.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3조제7항에서 교육의 방법, 내용 및 경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고 상위법령 내용을 그대로 규정하였으므로 법령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
- 다만 개정되는 내용들은 상위법에 따라 당연히 적용되는 내용들로 굳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부분은 상위법이 개정되거나 폐지될 경우 조례 정비가 필요하고 제 때 정비되지 못할 경우 조례의 효력 다툼이나 법령 위반사항이 발생할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은 사항으로 보이는 바 특별히 조례로 위임하여 재기재가 필요한 사유가 있는지 설명이 필요함.

● 관련 법령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 2024. 7. 24.] [법률 제20085호, 2024. 1. 23., 일부개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법률 제19723호, 2023. 9. 14., 일부개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법률 제20038호, 2024. 1. 16., 일부개정]
<p>제13조(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① (생략)</p> <p>②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u>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을</u> 받아야 한다.</p> <p><신설></p> <p><신설></p> <p><신설></p> <p>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교육수요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교육의 실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를 통하여 제1항에 따른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p> <p><신설></p> <p><신설></p> <p>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방법, 내용 및 경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p>	<p>제13조(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① (현행과 같음)</p> <p>②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u>다음 각 호의 교육을</u> 받아야 한다.</p> <p>1.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p> <p>2. 성폭력 예방교육</p> <p>③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u>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을</u> 받아야 한다. 다만, 택시운수종사자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운수종사자 교육을 통하여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p> <p>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교육수요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교육의 실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를 통하여 제1항에 따른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p> <p>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 실시 관련 자료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작성·보존할 수 있다.</p> <p>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교육 실시결과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다.</p> <p>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교육의 방법, 내용 및 경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p>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시행 2025. 1. 17.] [국토교통부령 제1442호, 2025. 1. 17., 일부개정]

제3조(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① 관계 법령에 따라 새롭게 교통행정기관으로부터 면허·허가·인가·위탁 등을 받거나 교통행정기관에 등록·신고 등을 하는 교통사업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면허·허가·인가·위탁 등을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횟수, 교육 시간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 17.>

1. 교육의 횟수 및 교육 시간: 1회, 4시간 이상
2. 교육 내용: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된 법령과 제도
 - 나.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과 관련된 기술
 - 다.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법 제1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른 교육의 횟수, 교육 시간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 17.>

1. 교육의 횟수 및 교육 시간: 연 1회, 2시간 이상
2. 교육 내용: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교통약자의 정의 및 교통약자 유형에 대한 이해
 - 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된 법령과 제도
 - 다. 교통약자에 대한 응대 및 서비스 요령
 - 라. 비상상황 발생 시 대처 방법

④ 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의 횟수, 교육 시간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5. 1. 17.>

1. 교육의 횟수 및 교육 시간: 연 1회, 1시간 이상
2. 교육 내용: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 각 호의 사항

⑤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5. 1. 17.>

1. 직원연수·조회·회의 등의 집합교육
2.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
3. 체험교육

⑥ 교통행정기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교육에 관하여 그 교육 내용이 포함된 해당 연도의 교육계획 및 전년도 교육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5. 1. 17.>

⑦ 법 제13조제5항 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 실시 관련 자료”란 다음 각 호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신설 2025. 1. 17.>

1. 교육 대상자
2. 교육 일시·방법
3. 교육 내용 등 세부 실시내역 [전문개정 2012. 11. 30.] [제목개정 2020. 4. 23., 2025. 1]

□ 「경상남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1. 9. 30.] [경상남도조례 제5039호, 2021. 9. 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9조 등에 따라 경상남도 내 운수종사자 교육을 위한 연수기관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운수종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다. 그 밖에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연수기관”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수종사자 교육 및 도민 교통안전교육 등을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도지사가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연수기관의 지정) ① 도지사는 도내 운수종사자 교육 및 도민 교통안전교육을 위하여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이하 “연수기관”이라 한다)을 연수기관으로 지정한다.

② 도지사는 지정된 연수기관에 운수종사자 교육을 위한 필요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4조의2에 해당하는 보건위생 대책 마련을 위한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연수기관의 업무) ① 연수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운수종사자의 자질향상과 안전운행을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8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른 교육

2.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에 대한 교통약자서비스 교육

3.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분야 보건위생 증진 및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 교육

4. 도민의 교통질서 및 안전 교육과 어린이 교통예절 교육

5. 공무원 교통지식 함양 교육

6. 운수종사자 복지 향상과 선진 교통문화 구축을 위한 제반 사항

7. 운수종사자 성인지교육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② 연수기관은 제5조의 보조금을 교육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계획은 전년도 11월 말까지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해당 연도의 교육 실시 결과를 다음 해 1월 말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거창군 주차위반 자동차의 견인·보관 비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25. 5. 30.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25. 5. 30.

2. 제안이유

-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방치로 보행자 및 주행차량 안전사고와 도시미관 저해 문제가 증가함에 따라 무단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의 견인 비용을 신설하여 주차위반 개인형 이동장치의 견인 근거를 마련하여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하도록 명확하게 표현함(안 제명, 별표)
- 나. 개인형 이동장치의 견인비용을 신설함(안 별표)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1) 「도로교통법」 제2조
- 2)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5조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25. 5. 15.~5. 27.
 -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방치로 보행자 및 주행차량 안전사고와 도시미관 저해 문제가 증가함에 따라 무단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의 견인 비용을 신설하여 주차위반 개인형 이동장치의 견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임.

- 제명을 “거창군 주차위반 자동차의 견인·보관 비용에 관한 조례”에서 “거창군 주차위반 차의 견인·보관 비용에 관한 조례”로 개정된 부분은 「도로교통법」 제2조 차에 원동기 장치자전거를 포함하고 있고 원동기장치자전거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하고 있어 자동차를 차로 개정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견인을 추가로 규정하려는 것임.

- 별표 견인비용 대상차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신설하고 견인료를 20,000원으로 규정하였는 바, 「도로교통법」 제35조제2항에 차가 주차위반 시 견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5조에 소요비용을 징수토록 하고 있으며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조례의 내용과 체계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됨.



관련 법령

□ 「도로교통법」

[시행 2025. 3. 20.] [법률 제20375호, 2024. 3. 19.,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 가. 「도로법」에 따른 도로
 - 나.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 다.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 라.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車馬)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
2. “자동차전용도로”란 자동차만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를 말한다.
3. “고속도로”란 자동차의 고속 운행에만 사용하기 위하여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
4. “차도”(車道)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안전표지 또는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을 이용하여 경계(境界)를 표시하여 모든 차가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 5.~9. (생략)
10. “보도”(步道)란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통행하는 사람 및 제21호의3에 따른 실외이동로봇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 11.~16. (생략)
17. “차마”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
 - 가. “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1) 자동차
 - 2) 건설기계
 - 3) 원동기장치자전거
 - 4) 자전거
 - 5)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動力)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다만, 철길이나 가설(架設)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것,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제21호의3에 따른 실외이동로봇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장치는 제외한다.
 - 나. “우마”란 교통이나 운수(運輸)에 사용되는 가축을 말한다.
- 17의2. “노면전차”란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노면전차로서 도로에서 궤도를 이용하여 운행되는 차를 말한다.
18. “자동차”란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견인되는 자동차도 자동차의 일부로 본다)로서 다음 각 목의 차

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다음의 자동차. 다만,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제외한다.

- 1) 승용자동차
- 2) 승합자동차
- 3) 화물자동차
- 4) 특수자동차
- 5) 이륜자동차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18의2·18의3. (생략)

19. “원동기장치자전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이륜자동차

나. 그 밖에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 및 제21호의3에 따른 실외이동로봇은 제외한다)

19의2.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0.~21의3. (생략)

24. “주차”란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차가 고장 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

25. “정차”란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말한다.

26. “운전”이란 도로(제27조제6항제3호·제44조·제45조·제54조제1항·제148조·제148조의2 및 제156조제10호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 또는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7.~ 34. (생략) [\[전문개정 2011. 6. 8.\]](#)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
2.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停留地)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건물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6.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가.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

7. 시·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8. 시장등이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

제33조(주차금지 장소)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 차를 주차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12. 22.>

1. 터널 안 및 다리 위

2.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가.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로 소방본부장의 요청에 의하여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한 곳

3. 시·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전문개정 2018. 2. 9.]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 [전문개정 2011. 6. 8.]

제35조(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32조·제33조 또는 제34조를 위반하여 주차하고 있는 차가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주차 방법을 변경하거나 그 곳으로부터 이동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경찰공무원

2. 시장등(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명하는 공무원(이하 “시·군공무원”이라 한다)

② 경찰서장이나 시장등은 제1항의 경우 차의 운전자나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그 차의 주차방법을 직접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나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지정하는 곳으로 이동하게 할 수 있다.

③ 경찰서장이나 시장등은 제2항에 따라 주차위반 차를 관할 경찰서나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지정하는 곳으로 이동시킨 경우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차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차의 관리에 관한 위탁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나 운전자에게 신속히 알리는 등 반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경우 차의 사용자나 운전자의 성명·주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⑤ 경찰서장이나 시장등은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차의 반환에 필요한 조치 또는 공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차의 사용자나 운전자가 조치 또는 공고를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반환을 요구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할 수 있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차위반 차의 이동·보관·공고·매각 또는 폐차 등에 들어간 비용은 그 차의 사용자가 부담한다. 이 경우 그 비용의 징수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를 적용한다.

⑦ 제5항에 따라 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한 경우 그 차의 이동·보관·공고·매각 또는 폐차 등에 들어간 비용을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그 차의 사용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 차의 사용자에게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탁법」에 따라 그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제68조(도로에서의 금지행위 등) ① 누구든지 함부로 신호기를 조작하거나 교통안전시설을 철거·이전하거나 손괴하여서는 아니 되며, 교통안전시설이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을 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두어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12. 22.>

1. 술에 취하여 도로에서 갈팡질팡하는 행위
2.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눕거나 앉거나 서있는 행위
3.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공놀이 또는 썰매타기 등의 놀이를 하는 행위
4. 돌·유리병·쇳조각이나 그 밖에 도로에 있는 사람이나 차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
5.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6.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 뛰어오르거나 매달리거나 차마에서 뛰어내리는 행위
7. 그 밖에 시·도경찰청장이 교통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행위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10. 19., 2023. 10. 24.>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의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

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1의2. 제50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받고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하거나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설치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2. 제56조제2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등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

4. 제68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 내버려둔 사람

5. 제76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통안전교육강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교통안전교육을 하게 한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

6. 제117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 등을 사용한 사람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 제5조,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제13조제3항의 경우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에서 고의로 위반하여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까지 및 제5항, 제14조제2항·제3항·제5항, 제15조제3항(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조의2제3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3항(제151조의2제2호, 제153조제2항제2호 및 제154조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18조, 제19조제1항·제3항 및 제4항, 제21조제1항·제3항 및 제4항,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제32조, 제33조, 제34조의3, 제37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제3항·제4항·제5항, 제48조제1항, 제49조(같은 조 제1항제1호·제3호를 위반하여 차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과 같은 항 제4호의 위반행위 중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를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50조제5항부터 제10항(같은 조 제9항을 위반하여 자전거를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까지, 제51조, 제53조제1항 및 제2항(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는 제외한다), 제62조 또는 제73조제2항(같은 항 제1호는 제외한다)을 위반한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

2. 제6조제1항·제2항·제4항 또는 제7조에 따른 금지·제한 또는 조치를 위반한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

3. 제22조, 제23조, 제2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53조의5, 제60조, 제64조, 제65조 또는 제66조를 위반한 사람

4. 제31조, 제34조 또는 제52조제4항을 위반하거나 제35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람

5. 제39조제6항에 따른 시·도경찰청장의 제한을 위반한 사람

6. 제50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좌석안전띠를 매지 아니하거나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아니한 운전자(자전거 운전자는 제외한다)

6의2. 제5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자율주행시스템의 직접 운전 요구에 지체 없이 대응하지 아니한 자율주행자동차의 운전자

7. 제95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운전면허증 회수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사람
8. 삭제 <2020. 5. 26.>
9. 삭제 <2020. 5. 26.>
- 9의2. 삭제 <2020. 5. 26.>
10.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
11.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등을 운전한 사람
1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 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자전거등을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13.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의국면허증 중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것으로 기재된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의국면허증을 발급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사람
[전문개정 2011. 6. 8.]

□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 2025. 4. 8.] [대통령령 제35432호, 2025. 4. 8., 일부개정]

제13조(주차위반 차의 견인·보관 및 반환 등을 위한 조치) ① 경찰서장, 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차를 견인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 또는 범칙금 부과 및 견인 대상 차임을 알리는 표지(이하 “과태료부과대상차표지”라 한다)를 그 차의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 견인 대상 차임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② 경찰서장, 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차를 견인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차의 사용자(소유자나 소유자로부터 차의 관리를 위탁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운전자가 그 차의 소재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③ 경찰서장, 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차를 견인하였을 때부터 24시간이 경과되어도 이를 인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차의 보관장소 등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해당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④ 경찰서장, 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견인하여 보관하고 있는 차의 사용자나 운전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차를 견인한 날부터 14일간 해당 기관의 게시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부를 작성·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1. 보관하고 있는 차의 종류 및 형상

2. 보관하고 있는 차가 있던 장소 및 그 차를 견인한 일시

3. 차를 보관하고 있는 장소

4. 그 밖에 차를 보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⑤ 경찰서장, 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제4항에 따른 공고기간이 지나도 차의 사용자나 운전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제4항 각 호의 내용을 일간신문, 관보, 공보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고해야 한다. 다만, 일간신문 등에 공고할 만한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0. 11. 24.> [전문개정 2013. 6. 28.]

제14조(보관한 차의 매각 또는 폐차 등) ① 경찰서장, 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뜻을 자동차등록원부에 적힌 사용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경찰서장, 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차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쟁입찰로 하여야 한다.

1. 비밀로 매각하지 아니하면 가치가 현저하게 감소될 우려가 있는 경우

2. 경쟁입찰에 부쳐도 입찰자가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경쟁입찰에 부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경찰서장, 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차의 재산적 가치가 적어 제2항에 따른 경쟁입찰 등의 방법으로 차가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차를 폐차할 수 있다.

④ 경찰서장, 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차를 매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매각결정서를 매수인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차를 폐차한 경우에는 관할 관청에 그 말소등록을 촉탁(囑託)하여야 한다.

1. 매각된 자동차의 등록번호

2. 매각일시

3. 매각방법

4. 매수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주소

[전문개정 2013. 6. 28.]

제15조(소요비용의 징수 등) ① 경찰서장, 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견인하여 보관한 차를 반환할 때에는 법 제35조제6항에 따라 그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로 부터 그 차의 견인·보관 또는 공고 등에 든 비용(이하 “소요비용”이라 한다)을 징수하고, 범칙금 납부통고서 또는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발급한 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수증을 받고 차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② 경찰서장, 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소요비용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납부금액, 납부기한 및 납부장소를 적은 문서로 그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③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 6. 28.]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2025. 3. 20.] [행정안전부령 제554호, 2025. 3. 20., 일부개정]

제2조의3(개인형 이동장치의 기준) 법 제2조제19호의2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의 신고가 된 것을 말한다.

1. 전동킥보드

2. 전동이륜평행차

3.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본조신설 2020. 12. 10.] [제2조의2에서 이동 <2022. 4. 20.>]

제22조(주차위반차의 견인·보관 및 반환 등을 위한 조치 등) ①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또는 범칙금 부과 및 견인대상차 표지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13조제2항에 따라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차를 견인한 경우에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차가 있던 곳에 견인한 취지와 그 차의 보관장소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영 제13조제3항에 따라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에게 통지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차의 등록번호·차종 및 형식

2. 위반장소

3. 보관한 일시 및 장소

4. 통지한 날부터 1월이 지나도 반환을 요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차를 매각 또는 폐차할 수 있다는 내용

④제3항에 따른 보관 중인 차의 인수통지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⑤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견인하여 보관한 차를 반환할 경우의 인수증은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